

1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과다호가부담금 제도 개선)
-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(임의적·일시적 매출 관련 매출액 기준 상향)
- 다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(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 산정기준 개정)
- 라.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(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제도 정비)

1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5/8/18 개정 · 2025/8/2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과다호가부담금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며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부과 기준 변경 근거 신설(제164조의3)
 -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다호가부담금의 부과대상, 산출방법, 면제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
 - 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」 제156조의2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폭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,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
 - 이 경우 회원은 과도한 호가건수에 대한 과다호가부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함
 - 거래소는 거래 수요, 시장의 유동성 및 호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다호가부담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

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(2025/8/1 개정 · 2025/8/1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상장폐지 관련 매출액 기준 강화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의 매출액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함
 - 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」 개정(2025.7.9.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주요 내용

□ 임의적·일시적 매출 관련 매출액 기준 상향(제5조 제1항 및 제2항)

- 매출액 미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인의 임의적·일시적 매출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
 - 상장폐지 관련 매출액 기준의 단계적 강화 수준 (기준) 50억원 → (2027.1.) 100억원 → (2028.1.) 200억원 → (2029.1.) 300억원으로 비례하여 상향
 - 강화된 매출액 기준(2027.1.1. 시행)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직전 연도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므로, 임의적·일시적 매출 관련 매출액 기준 상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

[임의적·일시적 매출 관련 매출액 기준 적용]

구분	매출액 기준			적용 면제 (제5조 제2항 제1호)
	75% 영업부문 매출 (제5조 제1항 제2호)	신규사업 제외 매출 (제5조 제1항 제3호)	단일판매·공급 제외 매출 (제5조 제1항 제4호)	
기존	10억원	50억원	50억원	100억원
개정	'28.1.1.~	20억원	100억원	200억원
	'29.1.1.~	40억원	200억원	400억원
	'30.1.1.~	60억원	300억원	600억원

□ 주된 영업 정지 관련 매출액 기준 상향(제6조 제1항)

- 주된 영업 정지로 보는 주된 영업의 중단·이전 후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
 - 강화된 상장폐지 관련 매출액 기준(300억원), 분할재상장 관련 매출액 기준(500억원)등을 고려하여 상향

[주된 영업 정지 관련 매출액 기준]

기 존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잔여 사업부문의 최근 매출액 - 50억원 미만 - 75억원 미만 & 전체의 25% 미만 - 100억원 미만 & 최근 3년 매출 감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잔여 사업부문의 최근 매출액 - 300억원 미만 - 400억원 미만 & 전체의 25% 미만 - 500억원 미만 & 최근 3년 매출 감소

□ 약식심사 요건 현실화(제10조 제1항)

- 우량기업에 대해서만 약식심사를 진행하도록 관련 매출액 및 자기 자본 기준을 현실화
 - 우량기업에 대해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심사 항목을 생략 (심사 기간 단축)
 - 제도 취지가 유사한 상장예비심사 패스트트랙(Fast Track)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

[약식심사 요건]

기 존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출액 300억원 • 자기자본 300억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출액 7,000억원 • 자기자본 4,000억원

다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(2025/8/28 개정·2025/8/2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 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품군 및 기초자산 선정 방식 개정(제17조, 별표 4)
 -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군을 구성하고, 기초자산 간 상관관계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기초자산을 선정
- 상품군 가격상관율 산정 방식 개정(제18조, 별표 4)
 - 상품군 내 기초자산간 상관관계 측정을 위한 가격상관율 산식을 개정

라.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(2025/8/21 개정·2025/8/25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이미지 향상 및 우수기업으로서 신호 효과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제도 정비를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제도 정비(제8조)
 - 정기 취소기준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 조정
 - (기존) C등급 이상일 것 → (개정) B등급 이상일 것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